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금 마련 지출 조항 삭제(안 제13조)

-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수입금 마련 지출 조항 삭제

나. 위원회 구성 비율 정비(안 제22조)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직 위원 구성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구미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택지등”을 “택지 등”으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을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아 들여야 한다”를 “받아들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청 할”을 “제청할”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중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을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1이하”를 “1 이하”로, “계산 대상금액”을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증 할”을 “보증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공영개발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당해사업”을 “해당사업”으로,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을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년도에”를 “사업연도에”로, “사업년도로 부터”를 “사업연도부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제15조제2호 중 “익년도”를 “다음 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회전 기금을 설치운영”을 “회전기금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회전기금”을 “이 경우 회전기금”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요자산의취득 및 처분)”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
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
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
의”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 부터 6 월”
을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로,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고서에 한한다”를 “보고서로 한정하
다”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
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제1항 중 “‘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구미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3항 중 “위원”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으로, “회계등”
을 “회계 등”으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공무원 중에서
시장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공영개발 사업평가는 년1회이상”을 “공영개발사업평가
는 연 1회 이상”으로, “반영 하여야”를 “반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 중 “공영개발 사업평가”를 “공영개발사업평가”로 한다.

제2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구미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 ----- 택지 등-----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 -----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 -----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경영 수익사업	4. 그 밖의 -----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 ----- 1 명-----.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 ----- 범위----- -----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② -----

한 제1항의 건의를 <u>받아 들여야 한다</u>	----- <u>받아들여야 한다.</u>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u>제청</u> 할 수 있다.	제5조(인사) ① ----- ----- ----- <u>제청</u>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u>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u>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 규정) ----- 「지방공기업법」(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u>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u>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u>의하여</u>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 ----- <u>법 제13조에 따라</u> ----- ----- <u>따라</u> -----.
제8조(<u>회계년도</u>)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u>회계년도</u> 는 일반회계의 <u>회계년도</u> 와 같다.	제8조(<u>회계연도</u>) ----- ----- <u>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u> -----.
제9조(<u>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u>) (생 략)	제9조(<u>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u>)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자) ① (생 략)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	제10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항에 따른</u> ----- ----- -----

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

-----.

③ -----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

-----.

④ -----

----- 해당연도 -----
----- 1 이하-----
계산대상금액-----.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

-----.

----- 보증할 -----.

② 제1항에 따른 -----

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

<삭 제>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 공영개발사업
----- 해
당 사업-----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 사업연도에 -----
- 사업연도부터 -----

- 각 호-----.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

<u>적립금</u>	<u>금</u>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u>익년도</u> 상환액의 기채 적립금	2. ----- ----- <u>다음 해</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 처분</u> 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u>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u> 납부 적립금	4.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u> <u>에 따라</u> ----- ----- <u>제10</u> <u>조제4항에 따른</u> ----- ---
5. <u>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u>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5.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u> <u>에 따라 처분</u> 을 하고도 <u>잉여</u> <u>금의</u> ----- ----- -----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 업무를 위하여 <u>회전 기금을 설치운영</u> 할 수 있다.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 ----- ----- <u>회전기금을</u> <u>설치·운영</u> -----.
제17조(<u>중요자산의취득 및 처분</u>) <u>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u>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	제17조(<u>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u>) <u>법 제40조에 따라</u> ----- ----- -----

한다.

제18조(계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생략)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

제18조(계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

----- 다음연도 ---

1. (현행과 같음)

2. ----- . -----

----- 보고서로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

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경영평가) ① -----

----- 구미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 회계 등-----

-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u><후단 신설></u> ④ <u>공영개발 사업평가</u>는 <u>년1회 이상</u>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u>반영</u>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u>공영개발 사업평가</u>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u>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④ <u>공영개발사업평가</u>는 연 1회 이상 ----- ----- 반영 하여야 ----. ⑤ ----- <u>공영개발사업평가</u>--- ----- -----. 제23조(시행규칙) ----- -- <u>필요</u>----- -----.
--	--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소관 실·과		도 시 과
입 안 자	과 장	최 규 호
	담 당	이 종 우
	담 당 자	김 태 영 (480-5413)